의안번호	2200611
의 뢰 인	김종양 의원
회 답 일	2024.6.26.
추계번호	24F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등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220억원, 2029년 265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198억원(연평균 2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귀농인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5년간 -144억원(연평균 −29억원)

○ 농어업인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연장: 5년간 -324억원(연평균 −65억원)

○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연장: 5년간 −153억원(연평균 −31억원)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연장: 5년간 −149억원(연평균 −30억원)

○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5년간 −429억원(연평균 −86억원)

○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5년간 -0.65억원(연평균 -0.13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6조제4항)	−29	−29	−29	−29	−29	−144	−29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제2항)	−46	−54	−63	−74	−87	−324	−65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제16조제1항)	−37	−34	−30	−27	−25	−153	−31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제35조의2)	−22	−26	−29	−33	−38	−149	−30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7조의2제2항·제5항)	−86	−86	−86	−86	−86	−429	−86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7조의3제1항)	−0.13	−0.13	−0.13	−0.13	−0.13	−0.65	−0.13
합 계	−220	−229	−237	−249	−265	−1,198	−24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4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2	안 제10조제4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농어업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 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3	안 제16조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4	안 제2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5	안 제57조의2 제2항·제5항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 등이 합병에 따라 양수받은 재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 과점주주가 부실기관으로부터 주식·지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6	안 제57조의3제1항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4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2	안 제10조제4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3	안 제16조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4	안 제2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5	안 제57조의2제2항·제5항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6	안 제57조의3제1항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6조제4항)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의 귀농가구수 추이를 볼 때,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혹은 해당 농지 등의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귀농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귀농가구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

❑ (안 제10조제4항)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18~'22년) 연평균 실적 증가율: 17.3%

❑ (안 제16조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8~2022년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에도 감면액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18~2022년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연평균 증감률: -9.9%

❑ (안 제35조의2)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19~'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감면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감면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19~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감률: 14.1%

❑ (안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제도변화로 인한 조정을 반영한 최근 3년('20~'22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감면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2018년 이전 자료를 세수효과 추계에 활용하기 어려움

- 농업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따른 양수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경우 2018년 세법개정으로 금융회사 간 합병 등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

- 과점주주의 부실금융기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경우 지주회사가 동일계열의 아닌 일반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 농업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따른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저납부세제 적용배제 조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연평균 감면액 산출 시 2020년 감면액의 경우 감면실적의 85%만 반영

❑ (안 제57조의3제1항)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동 감면의 최초 적용(2015년) 이후 실적이 존재하는 2년('15~'16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계

○ 농업협동조합 등이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5년 465만원, 2016년 2,117만원이며, 2017년 이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6조제4항)

(1) 제도 개요

❑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 귀농일 이전 1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2021년 세법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 취득 농지 범위가 확대(직접 경작 목적→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의 농지)되고 취득세 감면 요건이 변경(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등을 취득한 경우→농지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었음

(2) 추계방법

❑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28.8억원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 2022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증감추세가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도 △18.2%~13.1%로 불규칙함

[표 2]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32.4	26.5	26.0	29.4	3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 귀농가구 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

[표 5] 귀농가구수: 2018~2022년

(단위: 가구)

	2018	2019	2020	2021	2022
귀농가구수	11,961	11,422	12,489	14,347	12,411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

(3) 추계결과

❑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제6조 제4항)	−28.8	−28.8	−28.8	−28.8	−28.8	−144.0	−28.8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안 제10조제4항)

(1) 제도 개요

❑ 농어업인 등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

○ 일반적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는 다음과 같음

- (사업소분) 기본세액 + 사업소 연면적 기준 부과

  * 기본세액: (개인) 5만원, (법인)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2010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현재까지 감면요건·감면율 등 제도변화 없음

(2) 추계방법

❑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18~'22년) 연평균 실적 증가율은 17.3%

[표 11] 농어업인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15	16	19.5	23.5	28.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 다만,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감면에 관한 요건·대상 등의 제도개편도 없었으며, 지역마다 연도별 증감 추세 또한 불규칙하여 특정 원인으로 인해 최근 주민세 감면 실적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3) 추계결과

❑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한 연장(안 제10조제2항)	−45.8	−53.8	−63.1	−74.0	−86.8	−323.5	−64.7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16조제1항)

(1) 제도 개요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8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액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범위

- 신규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 농어촌 주택개량 등

○ 2019년부터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감면액 상한 도입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취득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

[표 7]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안 제16조제1항) 개정사항

	2018년 이전	2019년	2022년
거주요건	해당 지역 거주자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범위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바닥면적 7배 이내의 부속토지 포함)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좌동)
감면내용	취득세 면제	280만원 한도 내 감면	(좌동)

❑ (감면실적)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8년 78억에서 2022년 51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

○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개량 사업이 정체되면서 관련 감면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표 8]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18~'22년 연평균 증감률
취득세	78	76	68	59	51	−9.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2) 추계방법

❑ 2022년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감면액이 연평균 9.9%씩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2년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실적: 51억원

○ 2018~2022년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연평균 증감률: −9.9%

(3) 추계결과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제16조제1항)	−37	−34	−30	−27	−25	−153	−31

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35조의2)

(1) 제도 개요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

○ 일반적으로 농지는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29.4만원 수준

- 6억원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0.07%(농지 분리과세 세율) = 29.4만원

❑ (감면실적)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8년 7억에서 2022년 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지속적인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표 10]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실적	7	9	11	13	1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년도

[표 11]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2019~2023년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19~'23년 연평균 증감률
가입자수	14,492	17,098	19,178	21,708	24,590	14.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

(2) 추계방법

❑ 2022년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2019~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연평균 증감률 14.1%에 따라 감면실적이 증가한다고 가정

○ 향후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농지연금 누적 가입수 증가에 따라 매년 14.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추계결과

❑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재산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제35조의2)	−22	−26	−29	−33	−38	−149	−30

마.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안 제57조의2제2항·제5항)

(1) 제도 개요

❑ 농업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따른 양수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과점주주의 부실기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에 따른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안 제57조의2제2항)의 경우 2018년 개정 등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축소

- (취득세) 2020년까지 취득세 면제 및 최저납부세제 적용배제가 유지되나 2021년 이후 최저납부세제 적용배제 기한 종료로 실질적인 감면율이 100%에서 85%로 축소
- (등록면허세) 2018년 세법개정으로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대상이 감면대상에서 제외, 등록면허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

○ 과점주주의 부실기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57조의2제5항)의 경우 2018년 개정 등으로 감면대상이 축소

- 지주회사가 동일 계열의 아닌 일반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추계방법

❑ 제도변화로 인한 조정을 반영한 최근 3년('20~'22년)간의 연평균 감면 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13]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2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최근 3년 연평균
농협 등 합병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안 제57조의2제2항)	취득세	3.8	0.1	5.7	3.2[1)]
	등록면허세	0.1	0.1	0.3	0.2
과점주주의 부실금융기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57조의2제5항)	취득세	92.8	73.5	81.2	82.5

주: 1) 농업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따른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2021년부터 최저납부세제 적용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0년 감면액의 경우 감면실적의 85%만 반영하여 연평균 감면액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29.2억원(연평균 8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농협 등 합병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7조의2제2항)	취득세	−3.2	−3.2	−3.2	−3.2	−3.2	−15.9	−3.2
	등록면허세	−0.2	−0.2	−0.2	−0.2	−0.2	−0.8	−0.2
과점주주의 부실금융기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7조의2제5항)	취득세	−82.5	−82.5	−82.5	−82.5	−82.5	−412.5	−82.5
합계		−85.8	−85.8	−85.8	−85.8	−85.8	−429.2	−85.8

바.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안 제57조의3제1항)

(1) 제도 개요

❑ 농업협동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동 감면은 201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감면요건·감면율 등 제도변화 없음

(2) 추계방법

❑ 동 감면의 최초 적용(2015년) 이후 실적이 존재하는 2년('15~'16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계

○ 농업협동조합 등이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5년 465만원, 2016년 2,117만원이며, 2017년 이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음

[표 15]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5~2022년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5~'16년 평균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57조의3제1항)	0.05	0.21	-	-	-	-	-	-	0.1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0.65억원(연평균 0.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57조의3제1항)	-0.13	-0.13	-0.13	-0.13	-0.13	-0.65	-0.13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